

|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생활보장과-25<br>24 |
| 결재일자 | 2016.1.20.     |
| 공개여부 | 대시민공개          |
| 보도여부 |                |

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주무관 | 장애인복지팀장 | 생활보장과장 | 주민생활국장          |
| 길재호 | 유숙희     | 이승하    | 전결 01/20<br>강대형 |
| 협 조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

**2016년 강북구장애인편의시설  
지원센터 운영계획**

2016.1.20.

강 북 구

# 2016년 강북구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계획

장애인 편의시설의 사회적 이해촉진과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편의시설 확충에 이바지 하고자 함

## I 운영개요

### ■ 지원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23조(편의시설)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

### ■ 사업기간 : 2016년 1월 ~ 12월

### ■ 위 치 : 강북구 덕릉로 126 우일빌딩 1층 (번동)

- 강북구장애인복지지원센터(강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) 내 위치  
※ 2016년 7월부터 장애인회관으로 이전(예정)

### ■ 센터 장 : 지체장애인협회 강북구지회장 (정수민 , '47.05.06.)

### ■ 운영내용

- 운영주체 :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지회
- 주요업무 : 편의시설 설치관련 기술지원(개발 및 도입),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, 편의시설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 등
- 편의시설 설치대상 : 공공기관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  
※ 도로, 교통시설, 여객시설 등 교통시설물은 2006.01.28.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으로 건설교통국에서 관리
- 운영요원 : 총 2명 (행정요원 1명, 기술요원 1명)

## II

# 2015년 추진실적

### 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협의 : 423건

- 건축허가 협의 262건, 사용승인 협의 161건

## III

# 세부 추진계획

### ■ 지원센터 업무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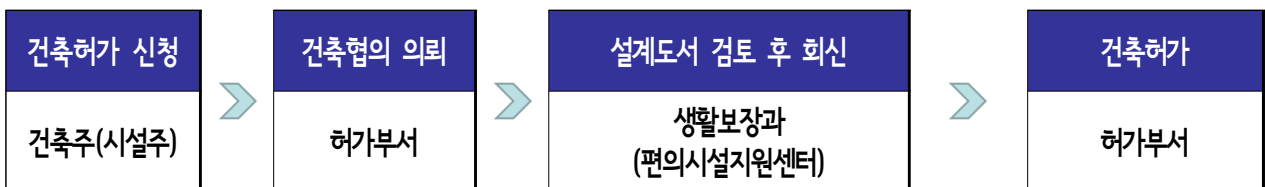
- 신·개축 건축물 건축협약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술지원

- 대상시설 :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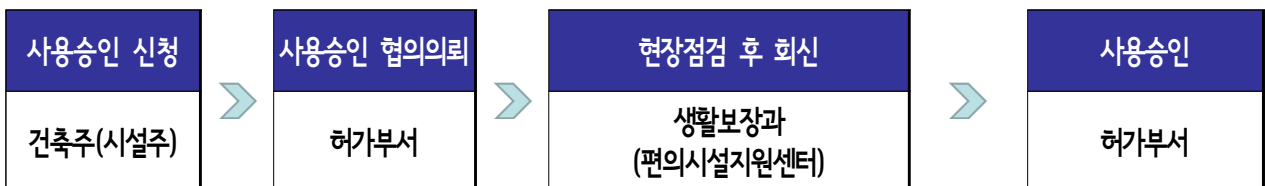
※ 『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3조

- 협의절차 : 건축허가시(설계도서) 및 사용승인시 사전협의

1) 건축허가 시 협의절차 : 설계도면의 법령 적합여부 검토



2) 사용승인 시 협의절차 : 현장점검 및 이행여부 확인



-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 확산을 위한 업무 지원

-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약 시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토록 홍보 및 유도

-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 대상시설 사전 예비조사 실시

-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
-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운영 관리 철저
  -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요원의 점검능력 강화교육 실시 등 사업추진 실시
  - 다양한 모니터링 조사업무에 대한 점검매뉴얼 개발 등 관리능력 제고

## IV 소요예산

- 사 업 비 : 83,726천원 (시비 41,863천원 / 구비 41,863천원) - 확정내시
  - ※ 2016년 본 예산(85,638천원)은 감간주 처리 예정
- 예산과목 : 생활보장과, 장애인복지증진, 장애인복지지원,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비지원, 민간이전,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
- 교부방법 : 단체 청구에 의거 분기별 보조금 교부,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점검 운영비 및 인건비 20,931,500원 × 4분기 = 83,726천원

**붙 임 장애인편의시설관련사업에 관한 협약서(안) 1부. 끝.**

# 「장애인편의시설관련사업」에 관한 협약서 (안)

서울특별시 강북구(이하 “강북구”라 한다)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(이하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라 한다)는 「장애인편의시설관련사업」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①이 협약은 “강북구”와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간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업내용)** ①사업이란 장애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과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위한 것을 말한다.

②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- 가.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신축, 증축 등 설계도면에 대한 기술적 지원
- 나.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 및 매뉴얼 개발
- 다.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
- 라. 장애인편의시설모니터링사업 업무 협조·수행
- 마. 장애인편의시설실태 전수조사 관련 업무 협조·수행
- 바.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는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의 예산·집행 총괄 관리 및 시민촉진단과 긴밀한 업무 협조·수행, 즉 편의시설 설치홍보 및 안내, 실태조사 참여,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, 강북구에 신고 및 의견제시 등.

**제3조(협약기간)** 이 협약에 의한 사업 기간은 2016.01.01.부터 2016.12.31.까지로 한다.

**제4조(위탁금)**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, 이 사업 관련 전체 위탁금은 시보조금을 포함하며,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가 분기별 사무요원 인건비, 사무용품 등 운영비, 사업비를 요구하면

“강북구”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5조(사업계획)** ①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는 당해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“강북구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“강북구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6조(사업실적 제출)**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는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고, 매월 사업실적은 다음달 5일까지 “강북구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사업실시의 원칙)** ①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,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.

②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는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(개인 및 업체의 정보 포함)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④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.

**제8조(지도·감독)** ① “강북구”는 사업과 관련한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의 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 지도·감독한다.

② “강북구”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에 요구하거나 “강북구”의 소속직원 또는 “강북구”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의 업무상황·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,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9조(손해배상 등)** ①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

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“강북구”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는 이를 “강북구”에게 지정기한 내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준용 및 해석)** ① 이 협약서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,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준용한다.

② 이 협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“강북구”의 해석에 따른다.

**제11조(협약의 효력 등)** ① 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이 있다.

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“강북구”와 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는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③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“강북구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.

2016년 1월 일

“강북구” :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(수유동)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(인)

“강북구편의시설센터” :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26(번동)

서울특별시 강북구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 (인)